

연금저축 지원중단 직원 재지원 추진

□ 검토배경

○ 2017.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(연금저축 해지자 재지원)

- 의결내용 : 해지자 중 원금을 인출하지 않고 상품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직원 限 재지원

□ 지원(안)

○ 지원대상 : 상품변경, 금융기관 이동 등으로 회사지원이 중단된 직원(최대 65명)

-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작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

○ 지원내용 : '17년 가입 당시 지원 종료일까지 지원 재개(ERP 가입원부 기준)

- 회사지원 중단시점부터 '18.2월까지 미지원분에 대해 일시 지원(종료시점 동일)

※ 연금계좌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추가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계좌로 지원

○ 대상 금융기관 : 현재 지원중인 금융기관 限(국민은행 등 30개사)

- '17.1월 이후 개설된 본인명의의 계좌만 인정(계좌사본 제출)

○ 검증방법 :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징구 후 금융기관 사후 재검증

-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한 서류만 인정(인터넷 발급, 통장사본 등 불가)

[증빙서류 예시]

- 계좌이동 : 계좌이체 명세서(은행권), 연금계좌 이전확인서(증권사) 등
- 상품변경 : 거래내역 증명서(은행권), 매도·매수확인서(증권사) 등
- ※ 상기 서류는 금융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며,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두 가능

□ 추진일정

○ 대상자 확인(재직자 중 연금저축 미지원 직원) : ~ 2.14(수)

○ 지원대상 직원 증빙서류 접수 : 2.19(월) ~ 3.2(금)

○ 금융기관 검증 : ~ 3.9(금)